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1
발의일자	2023.5.31.
회부일자	2023.6.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창혁 의원 외 19명

2. 제안이유

-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함 (안 제2조)
- 나.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다.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정함 (안 제4조)

라. 파독근로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경비 보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4. 관련법령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경북도 출신이거나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

당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 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안 제3조는 파독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파독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의 범위, 방법 등은 집행부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에 관해 규정한 사항으로 기념 시설 건립, 기념일 지정,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 제3조 및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과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¹⁾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광부의 경우 과독을 위한 모집부터 송출까지 정부가 담당했으며 과독 규모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으로 확인됨. 간호사는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모두 10,723명이 파독됐으며, 초기에는 민간에서 주선하다 1966년부터 정부주도로 바뀜.
 - 과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975년도까지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총 1억 153만 달러로, 이 중 1965, 1966, 1967년의 경우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였음.
- 2014년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과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과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과독 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

1) 외화가득률 : 가공무역에서 자국으로 순수하게 입금되는 외화획득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 총 수출액에서 실제로 얻은 외화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수출금액에서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자재비를 뺀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 한다. 외화가득률은 외화가득액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한 경우는 외화가득률이 높아 무역수지를 개선 및 국내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반대로 외화가득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입 부품소재 투입액이 늘어나 수출을 해도 이를 통해 번 외화가 줄어들었다 것을 뜻한다.(한경, 매경 경제용어사전)

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이에 2020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북도 출신이거나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정의 취지, 조문의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